

북한(3 등급)

북한은 상업적 성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다.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국내 상황을 피해 국경을 넘어 중국 북동부 지역으로 탈북하고 있으며,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인신매매 범죄나 성적·신체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탈북자 대상 인신매매 범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스스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한 탈북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인신매매 범죄조직이 납치하여 한국계 중국인에게 신부로 팔아 넘기거나 강제 노동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보다는 덜 일반적인 형태로 북한 내 여성이나 여아들을 식량·취업·자유를 미끼로 중국으로 유인하여 매춘·결혼·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북한은 주민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15 만에서 20 만 명에 이르는 수용자들이 벌목·채굴·재배 노역을 통한 강제 재교육을 받고 있다. 체제비관세력이나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강제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권은 국내 기업이나 해외 업체들에 의해 절실히 요구되는 해외 일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자국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으나 그 정확한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채용 과정에서의 강제성이나 사기 혹은 강박을 입증하는 증거는 제시된 바 없지만,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동 및 통신의 자유를 구속 받는 상태에서 열악한 근로조건하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돼있는 국가들에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리비아,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몰골, 쿠웨이트, 예멘, 이라크, 중국 등이 포함된다. 2007년 1월 체코 내무부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체코 내 북한 근로자들은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2007년 말까지 전원 출국할 예정이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철저히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요구되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국 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 및 인신매매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신매매 범죄와 기타 다른 형태의 불법 밀입국 범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과 의료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강제수용소를 운영함으로써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 정부가 해외 근로자들에게 외화로 지급되는 임금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그 대신에 외화 환전이 불가능한 자국 통화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 처리

북한은 국내 법집행 제도를 통해 인신매매를 근절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법률 체계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성인 인신매매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역시 존재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 형법 제 50 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납치·거래·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동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형법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와 탈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을 인신매매범과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존재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는 정치범과 범죄자를 수용소로 보내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북한에서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설사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떤 법률 조문을 적용하여 인신매매범을 기소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정부가 인신매매범을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러한 사례들에 중국 국경을 통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자발적으로 돕는 ‘전문적인 월경자’들의 활동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은 인신매매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기보다 국경 지역 전반의 질서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보호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보호나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인신매매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정부가 인신매매와 밀수, 불법이민, 탈북을 각기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중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교도소에 수감된다.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경 지역의 질서를 확보하고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며, 주민들을 학대·착취·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예방 노력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인권 유린 상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관리·추진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으로 구성된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엄격한 정부 감시하에 북한 내에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국내에서 설립된 비정부기구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북한은 2000 년도에 제정된 UN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